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4-80관련
----------	---------

발의년월일 : 2024. 6. 14.

발의자 : 이한동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상위법령 반영, 띄어쓰기, 단순오기 등을 정비 및 추가하여 법적 정확성을 도모하고 다둥이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구민 이용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6조, 제7조)

나. 다둥이 감면 조항 적용(안 제25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오기 등에 따른 정비(안 제2조, 제21조)

라.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이라 한다“이란”을 “”이라 한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제2조제5호”를 “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또는 등록인식표를”을 “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무선식별장치”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문화행사 개최”를 “문화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련프로그램”을 “관련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 략)</p> <p>3.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 <u>“이라 한다) “이</u> <u>란</u> 법 제2조제3호의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p> <p>4. (생 략)</p> <p>5. “맹견” 이란 <u>법제2조제5호</u>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p> <p>6. ~ 8. (생 략)</p> <p>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생 략)</p> <p>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 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 식별장치”라 한다) <u>또는 등록인 식표를</u> 장착 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이라 한다) “이란</u> ----- ----- -----.</p> <p>4. (현행과 같음)</p> <p>5. ----- <u>법 제2조제5호</u> ----- -----.</p> <p>6. ~ 8. (현행과 같음)</p> <p>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를</u> ----- ----- ----- -----</p>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③ (생략)

제21조(반려동물의 지원) ① ~

③ (생략)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 등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반려동물 문화행사 및 캠페인 등 관련프로그램 이용료 수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무선식별장치-----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반려동물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③ -----

----- 문화행사 -----

-----.

④ -----
----- 관련 프로그램 -----

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
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25조(반려견 놀이터 시설 이용
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이용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생략)

2. 100분의 50 감면

가. ~ 차. (생략)

<신설>

② (생략)

-----.

제25조(반려견 놀이터 시설 이용
료의 감면)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

복카드 소지자

② (현행과 같음)